

< 공모주 청약안내 >

1) 청약자격 및 한도

구 분

내 용

청약자격

1) 오프라인 청약: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중인 고객 중 정기등급 프라임등급 이상(법인제외)

프라임등급 (정기등급)

직전 분기 자산평잔 1천만원 이상

[오프라인 청약 : 영업점 내방 및 유선청약]

2) 온라인 매체 (WTS,HTS,MTS,ARS) 청약시: 청약개시일 전일 계좌 보유중인 모든 고객

단, 청약기간 동안 계좌개설 한 고객은 청약불가 (영업점 및 온라인 전매제)

→WTS, HTS, MTS 청약 참여 시, 청약 약관 승인 후 청약 가능

→영업점, 고객감동센터, ARS 청약 참여 시, 청약 약관 미승인 계좌도 청약 가능.

단, 청약 약관 SMS 발송 후 청약 가능. 핸드폰 번호 미보유시 약관수신불가로 청약 불가.

(영업점 및 온라인 매체에서 청약 약관 승인 후 청약 가능)

우대 (200%)

1) 고객등급 HNW 등급 이상 개인고객 (CIF 기준)

HNW등급 (정기등급)

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개인고객

(법인 제외, 법인은 한도 100%)

2) 연금보유고객(CIF 기준)

- 신연금펀드: 직전월 펀드 말잔 4 백만원 이상(예수금 제외)

- 구연금펀드: 직전월 말잔 4 백만원 이상

- 신연금펀드와 구연금펀드 동시 보유고객

(신연금펀드 말잔과 구연금펀드 말잔 합산 400 만원 이상)

3) 펀드보유고객(CIF 기준)

- 펀드 평가금액 직전 월 말잔 기준 5 천만원(CIF 기준) 이상 (단, 로보펀드의 경우 1 천만원 이상)

- 로보펀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펀드 중 당사가 지정한 펀드

- 펀드 평가금액 산정 시 예수금 및 연금펀드 제외

- 로보펀드 또는 펀드 평가금액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우대 적용

4) 개인형퇴직연금(IRP) 보유 고객 (CIF 기준)

- 개인형퇴직연금(IRP) 계좌 직전월 말잔 4 백만원(CIF 기준)이상 (예수금 제외)

5) 타사대체 순입고 1천만원 이상 (직전월 포함 3개월 합산)

6) 국내 및 해외주식 거래 1천만원 이상 (직전월 포함 3개월 평균)

※ 우대고객 중 오프라인 청약 고객은 연금보유고객이라도 기본 청약자격(정기등급 프라임등급)이상 충족할 것

수수료

1) 공모주 청약 수수료

구분

공모주 청약 수수료

수수료 면제 대상

오프라인 (유선 포함)

3,000 원

고객등급 HNW 이상 또는
공모주 미배정 고객

온라인 (ARS 포함)

2,000 원

기타사항

공모주 미배정 고객 청약 수수료 면제

법인고객 청약 수수료 면제

배정기준 (일괄 청약방식)	1)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절반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'균등방식'으로 배정하고,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함. 이 경우 묶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'균등 배정'이 '동일 수량'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.
	2) 균등 배정 후 남은 수량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경쟁률에 따라 '비례방식' 배정. 비례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하되,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함.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, 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,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함.
	3) 다만, 청약 접수 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 최소화를 목적으로 양 방식의 배정비율간 사후적 조정 가능.

2) 청약방법

구 분	방 법	마감시간
영업점 내방	당사 양식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 취급처에 청약	16:00
HTS	공모주/ELS청약 종합화면(TR 4771), 크레온(TR 1206)	
홈페이지	인터넷뱅킹 → 청약 → 공모주 청약신청 → 청약조회/취소	
모바일 (CYBOS Touch,, 크레온)	주식 → 청약/주식권리 → 공모주청약/취소	
유선청약	청약약정 등록 고객에 한하여 가능	
ARS청약	ARS 청약 메뉴: 6 번 청약서비스 → 2 번 공모주청약	

- ✓ 청약서 1 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 취급처에 청약합니다.
- ✓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 및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은 불가하오니,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✓ 청약자의 1 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.
- ✓ 청약사무취급기관은 청약자의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.
- ✓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9 조 제 5 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 132 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)께서는 청약하시기 전,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.
- ✓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, 동법 시행령 제 132 조에 의거,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, 전화, 전신, 모사전송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,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- ✓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,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✓ 추가납입 동의 시, 균등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청약 종료일 익영업일 17 시에, 비례배정으로 인한 추가납입은 환불/납입일 13 시에 자동출금 처리됩니다. 청약 참여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추가납입금에 미달할 경우 납입처리 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출금가능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3) 청약단위

- ✓ 일반청약자는 대신증권(주) 본/지점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.
- ✓ 대신증권의 **일반고객 최고청약한도는 17,000 주이며, 우대고객 최고청약한도는 34,000 주입니다.**
- ✓ 청약단위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,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의 하위 단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청약주식수	청약단위
10 주 이상 ~ 100 주 이하	10주
100 주 초과 ~ 500 주 이하	100주
500 주 초과 ~ 1,000 주 이하	200주
1,000 주 초과 ~ 5,000 주 이하	500주
5,000주 초과	1,000주

4) 환불

- ✓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 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신증권(주) 홈페이지(www.daishin.com)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.

5) 기타사항

- ✓ 본 공고는 향후 발행예정인 증권의 공모를 위한 단순 광고이며,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.
- ✓ 공모예정금액, 청약일/납입일 등 발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건은 청약일 전에 확정될 예정이며, 투자설명서, 예비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✓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(<http://dart.fss.or.kr>)에는 발행사의 사업보고서, 감사보고서 등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있으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✓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.
- ✓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- ✓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✓ 「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 8 조(주식청약증거금 등) ⑥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해당 공모주식 청약자에게 청약에 필요한 금전의 용자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✓ 일반청약자에게 복수 배정방식이 적용되어 각 방식에 따른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.
- ✓ IPO 공모주식은 상장 초기 가격변동성이 크며,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격을 하회하여 투자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.